

#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5-1-2)

최종개정일 : 2017. 11. 1.

##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절에 따라 건양대학교 내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 기구의 조직과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성적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3.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 연구,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와 함께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8장 제339조의 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법률이 2개로 나누어 개정됨)에 의한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③ 피해자란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1.)
- ④ 가해자란 성희롱, 성폭력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1.)
- ⑤ 신고인이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1.)
- ⑥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11.1.)
- ⑦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신설 2017.11.1.)
- ⑧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양성평등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7.11.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모든 구성원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② 본 대학교 모든 구성원이라 함은 건양대학교 총장과의 고용관계에 있는 자와 재직중인

학생(학부, 대학원) 및 건양대학교 규정에 의거 교내에서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건양대학교 총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될 경우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상담을 위해 센터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캠퍼스별로 설치한다.(개정 2017.11.1.)

제5조(센터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여 센터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제6조(전문상담원) ① 센터에는 고충상담원 남·여 각 1명을 지정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 보조상담원을 배치하여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에서는 매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충상담원전문교육을 1명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한다.

제7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2.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언 및 고충의 접수
3.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4.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5. 성희롱 및 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업무
7. 운영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보고 및 처리 요청
8.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9.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재발 방지
10. 성매매 및 가정폭력과 관련된 업무
1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제8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센터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에(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내의 모든 구성원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강사 1명 이상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및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피해자 보호내용 포함)
  4.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운영위원회

- 제9조(목적 및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대학원장,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1.)
  -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남성 또는 여성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회부) 센터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에 대한 사건이 접수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2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11.1.)

② 조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또한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위원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
2.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3.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 제4장 고충신고, 접수 및 처리

제15조 (신고 및 접수) ①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고충을 신고 및 접수 할 수 있다.(개정 2017.11.1.)

② 센터는 신고인,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

③ 센터의 전문상담원은 피해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3자 또는 단체의 신고가 있거나 상담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이를 센터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1.1.)

④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접수 및 조사·처리 과정에서 센터는 전문적 자문이 필요할 때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관계기관 또는 교내·외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7.11.1.)

⑤ 면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 또는 녹화할 수 있다.(신설 2017.11.1.)

⑥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신설 2017.11.1.)

⑦ 센터는 조정을 통해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신설 2017.11.1.)

- 제16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 조사 및 처리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은 신고 또는 제16조 제1항 외의 다른 경로로 성희롱,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1.1.)
- ③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시 전에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 ④ 피해자가 운영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혹은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전문상담원은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 ⑤ 조사는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조사 과정에서 센터장은 사건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⑧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건의 경위 경과 및 향후대책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의 방법) (조·항 신설 2017.11.1.)

-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센터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조·항 신설 2017.11.1.)

- 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 ③ 최종 조사 및 심의까지의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자가 조사위원장으로 위촉된 경우, 조사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통보한다.
- ⑤ 조사위원회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녹화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의 기각) (조·항 신설 2017.11.1.)

- ① 운영(조사)위원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성희롱, 성폭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운영(조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신설 2017.11.1.)

제21조(조사심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 및 중재할 수 있다.(개정 2017.11.1.)

- ② 운영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 ③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1.1.)
- ④ 운영위원회는 조사·심의 시 피해자와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1.1.)
- ⑤ 센터장은 사건의 심의 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피신고인이 내용증명발송을 통한 소환에 대하여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개정 2017.11.1.)
- ⑦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운영 및 조사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외된다.

제22조 (재심의) ① 사건당사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 한다.

제23조(기록 및 자료보존) ① 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사건 관련자와의 면담 및 조사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진위여부조사, 면담 과정 및 처리과정 등의 전 과정 기록을 보존한다.

## 제5장 조사의 종결 및 징계

제24조(조정) (조항 신설 2017.11.1.)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센터장의 직권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운영위원회의 회부 전에 사건해결을 위한 조정을 할 때는 피해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조정한다.

② 센터장은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30조 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센터는 전항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피신고인이 성실히 이행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한다.

④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제3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피신고인의 합의사항 불이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⑥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구제조치 등) (조항 신설 2017.11.1.)

① 센터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성폭력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 성폭력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조치) ① 센터장은 조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개정 2017.11.1.)

1.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와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

2.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

3. 가해자의 공개사과

4. 사회봉사프로그램 이수명령

5. 그밖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

② 센터장은 사건처리 종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7.11.1.)

③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격리 또는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장은 해당 부서에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7.11.1.)

1. 해당 교원의 수업 배제

2. 수강과목 변경

3. 지도교수 변경

4. 근무부서 변경

5. 그밖에 필요한 조치

제27조(징계) ① 운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되는 경우 운영위원장은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총장은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17.11.1.)

② 징계의 절차는 본 대학교 징계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 삭제(2017.11.1.)

④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의 가해자에 동조하는 자, 신고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위증하는 동조자, 누설하는 자에 의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동조자 또는 누설자에게도 제26조1항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일방이 외부인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가중징계 및 가중조치)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한 징계 및 가중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

2. 가해자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성폭력상담센터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해자나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

4.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 제6장 피해자 보호 등

제29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 함을 전제로 한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그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30조(사건 당사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거나 처리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 및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성명·연령·용모·주소·소속 기타 이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자료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와 대리인의 부당한 피해 역시 성희롱 및 성폭력 행위에 의한 피해로 간주한다.

제31조(피해자보호) ① 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보호에 충실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조사과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③ 피해자는 사건의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인으로부터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제32조(2차 피해의 방지) ① 위원회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3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회 또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에 관여한 자는 모두 해당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② 당사자가 사건에 대한 자료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사건처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다.(신설 2017.11.1.)

제34조(자료 확보와 구제 등에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 센터는 사건처리를 위해 필요한 증

거자료 확보와 긴급한 피해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1.1.)

제35조(기록 및 자료보존) 센터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상담, 조사·처리 과정 등 전 과정 기록을 2년간 보존한다.(신설 2017.11.1.)

## 제7장 보 칙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